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김달호 의원 대표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186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05일

발 의 자 : 김달호, 권수정, 김재형,
김정태, 김제리, 김평남,
김혜련, 문장길, 박상구,
박순규, 성흠제, 송아량,
이광호, 이상훈, 이태성,
임종국, 전석기, 최 선,
최정순, 한기영 의원(20
명)

1. 제안이유

-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배포되는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, 시민들의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, 청소년과 시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.
- 이에, 서울시와 자치구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, 시구 합동정비반 등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, 오히려 불법광고물은 증가(25만 5천건(2019) → 31만 2천건(2020))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 매년 정기적인 시·구 합동점검과 광고물 실명제,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광고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·구청장의 불법광고물 정비와 정기적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8조제2항).

나. 광고물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태조사를 규정함(안 제28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시장·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,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실명제,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) ①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시장·구청장은 도시경관 개선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여야 하며, 매년 정기적으로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③ 시장은 광고물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실명제, 불법광고물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④ (현행 제2항과 같음)</u></p> |

문서번호

2021020100000024

미첨부 사유서 (1호)

요청인 : 김달호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여차민 정책조사팀장
윤지민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2.01

회신일 : 2021.02.02

내용문의 : 02-2180-7945

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첨부 근거 규정
3. 미첨부 사유
4. 작성자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)제2항~제3항 신설에 따른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시행비용,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 발생
 - 안 제28조(불법 유동광고물 방지 및 제거 등)제2항에 따른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시행비용은 서울시에서 기 편성되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(기 추진사업 내용 붙임 참고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(제3조제1항제1호)

나. 추계결과≒44,550천원

- 예상되는 비용은 5년 동안 44,550천원으로 연평균 8,910천원임

- 추계의 전제

-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, 비용추계기간(2021~2025년) 이후에도 비용발생
-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은 유사사업인 시민소통기획관의 소통관리 및 시정정보 제공 사업 중 ‘옥외광고물 실태조사’ 내용을 준용하여 추계, 2년 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

※ 2021년 예산서 기준 시민소통기획관에서 추진 중인 ‘옥외광고물 실태조사’ 비용은 14,850천원이며, 격년으로 사업 시행 중

- 물가상승률 미만영

다.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 ≒ 44,550천원(연평균 8,910천원)

- 총비용 =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
= 44,550천원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| 연도 | 1차년도 (2021년) | 2차년도 (2022년) | 3차년도 (2023년) | 4차년도 (2024년) | 5차년도 (2025년) | 합계 |
|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| 세입 | - | - | - | - | - | - |
| | 소계 (a) | - | - | - | - | - | - |
| 세출 |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 (안 제28조제3항) | 14,850 | - | 14,850 | - | 14,850 | 44,550 |
| | 소계 (b) | 14,850 | - | 14,850 | - | 14,850 | 44,550 |
| □ 총 비용(b-a) | | 14,850 | - | 14,850 | - | 14,850 | 44,550 |

-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 ≍ 44,550천원
- 광고물 실명제·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비용
= 14,850천원 × 3회
= 44,550천원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 조도형
정책조사팀장 여차민
예 산 분 석 관 윤지민
☎ 02-2180-7945
e-mail : yjm1030@seoul.go.kr

[붙임] 동 조례안 관련 서울시 기 추진사업

(단위 : 천원)

| 세부사업명 (주관 부서) | 2021년 예산 | 사업 내용 | 관련 조항 |
|---|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제 추진 및 기동정비반 운영 (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) | 1,212,000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불법현수막 수거보상비 · 사업비 : 762,000천원 - 불법현수막 기동반 용역비 · 관련근거 :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·제9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2(시·도지사와 시 장등의 합동점검 절차) · 사업기간 : 2021.1.~12.(연례반복, 계속사업) · 사업비 : 450,000천원 · 사업내용 : 시·구 합동점검반 일정과 연계하 여 25개 자치구 불법현수막 점검·정비 · 정비반 구성 : 3개팀(각 팀별 용역원 3명 + 시·구 직원 1명), 불법현수막 정비 시 관찰구 청 입회하에 실시 · 운영방법 : 3개팀 일일 6개 자치구 점검, 점검 주기 자치구별 4일 | 안 제28조(불법 유동광 고물 방지 및 제거 등) 제2항 |

자료 : 2021년 서울시 예산(안) 사업별설명서